

#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김 선 이\*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경위
- III. 우주손해배상법의 주요 내용
- IV.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 V. 각국 우주사고 손해배상법
- VI. 나아가며

---

\*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부교수

## I. 들어가며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책임의 집중<sup>1)</sup> 및 이에 따른 책임보험의 의무적 가입과 정부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로써 2007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12월 7일 정부로 이송된 상황에 있다.

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우주손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여 규율할 수도 있으나 우주기술이 항공우주, 전기전자, 통신, 재료 등 첨단 과학기술이 집합된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규모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등 우주손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동 법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우주손해배상법의 성립경위와 그 주요내용 살펴보고 동법의 핵심인 책임보험에 관하여 그 현황과 각국의 해당법을 비교·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경위

우리나라는 2008년 4월 우리 영토에서는 최초로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KSLV-I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앞두고 만일의 사고 발생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인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홍창선의원 등 12인은 우주물체 발사, 인공위성 운용 등의 우주개발에 따른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책임한계 등을 골자로 하는 우주손해배상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6월에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연구가 과학기술부의 주관하에 이루어져 최종보고서 마련되었다. 2006년 8월 30일 국회 전문가간담

1) 책임집중이란 최종수요자가 원인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집중해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회 개최가 의회기관에서 상기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필자도 본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그후 2006년 9월7일, 8일 제1차, 2007년 1월 19일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하여 두 번에 걸쳐 수정 법률시안이 작성되었다<sup>2)</sup>.

2007년 2월 5일 우주손해배상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으며, 그 후 동법안은 2007년 2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주최 법률안제정 공청회 개최되었다. 2007년 4월 12일 제267회국회(임시회)에서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되었으며 2007년 9월 19일에 제1차 법률안심사위원회(2007년 10월 1일)의 심사보고를, 제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07년 10월 2일)의 수정의결, 제269회10차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었다.

### III. 우주손해배상법의 주요 내용<sup>3)</sup>

#### 1. 입법목적과 동법상 용어 정의

동법 제1조에서는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법구성의 기본요소로서 “이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사고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의 규정은 법 해석상의 문제를 회피하는 법구성의 기본요소로서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우주물체발사자, 우주물체발사, 우주사고, 우주손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4호에서 “우주손해”의 정의를 우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 피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주손해를 “제3자의 손해”로 한정함으로써 우주물체 발사를 위한 내부자들의 손해에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이는 우주물체 발사를 위한 탑재체 관리자와 발사체 발사자 및 부품

2) 웹사이트 <http://www.cshong.com/bbs-01> 참조

3) 국회 입법전문위원(정구복) 검토보고의 요지를 인용하였다.

등 공급자들 간에는 대개 일정한 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들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경합하게 되므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주물체 발사를 위한 내부자들간에는 상호면책 및 책임의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이들 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로 이 특약에 의하여 해결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 조항은 우주손해를 인적 손해와 물적 피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모두 직접 손해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 손해에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간접 손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간접손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sup>4)</sup>

## 2. 국제협약과의 관계

동법 제3조는 국제협약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가해자인 발사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sup>5)</sup>.

- 4) 간접 손해 또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배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동법초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이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다음과 같아서 수정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는 우주손해에 관한 규범으로 위 협약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만 입법 대상으로 함으로써 규범의 중복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협약은 국가의 국제적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발사체 발사자의 책임에 관한 동 법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위 협약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피해국 또는 피해자(법인 포함)가 발사국의 법원에 보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동 법의 적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법인 민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외국인에 대한 법 적용의 차별은 상호주의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대문명국가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법을 적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이 없고 소멸시효기간도 동 법보다 장기에 해당하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게 되므로 동 법안의 제3조제1항은 고려의 여지가 있다.

동법 제2항에서는 “이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사고 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항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우주사고로 인하여 타국가의 재산 및 인명의 손해를 주었다할지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국민이나 재산상의 피해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동일하게 배제하도록 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다.

### 3.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sup>6)</sup>

동법 제4조에서는 우주손해배상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주의, 책임집중의 원칙, 구상권의 제한,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제4조제1항에서 우주손해에 관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주기술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사업의 고도로 높은 위험성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우주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높일 수 있는 무과실책임의 원칙<sup>7)</sup>을 도입한 것은 불법행위법의 방지기능<sup>8)</sup>에 충실한 입법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주사고의 속성상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에 작용할 가능성은 상상하

6) 참조 입법례: 우주손해책임조약 제2조 및 제3조, 헤이그의정서 제6조, 오스트레일리아 우주활동법 제67조, 민법 제750조, 756조, 상법 제789조의3,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의2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바 있는 헤이그의정서(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임) 제10조와 영미법상의 wilful misconduct (인식 있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도 도입하여 입안하였다.

7)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손해만 발생하면 행위자의 책임이므로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8) 불법행위법의 두가지 기능 즉, 방지기능과 보상기능 중 최근 논의의 핵심은 보험제도의 발달로 인하여 보상기능에서 방지기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이다. 다만, 우주사고의 경우 손해규모가 막대하고 국내 보험시장이 생소한 분야이므로 보상기능에 관한 입법도 중요한 부분이다.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도입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 조항은 단서에서 국가간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간 무력충돌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까지 발사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는 전문성 면에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는자들 간에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우주손해와 같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동 조항의 단서에 삽입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제협약과 동 법 간의 충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4. 책임의 집중과 구상권의 제한

동법 제4조제2항에서는 우주물체 발사자의 구상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재 또는 역무 제공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9)</sup>.

이는 앞에서 살펴본 우주개발사업의 낮은 상업성과 함께 우주물체 발사자와 자재 또는 역무 제공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sup>11)</sup>를 고려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입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9) 무과실책임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불법행위법상의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됨.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에 대하여 과실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면책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10) 동 법초안 제4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우주물체발사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다음과 같아서 수정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는 우주물체에 필요한 수많은 부품과 용역 공급자를 모두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우주개발사업의 낮은 상업성과 과도한 책임부담으로 인하여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주손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우주물체 발사자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법제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11) 우주물체 발사자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자재 또는 역무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동항은 자재 또는 역무 제공자 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발사체 발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상권의 제한이므로 제3자의 경과실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배제

동 법은 제4조제3항에서 우주손해에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주물체와 그 부품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우주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경우 부품공급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함을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즉, 부품 공급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상업성이 낮은 우주개발사업의 속성상 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함께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우주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배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6.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설정

동 법은 제5조에서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12) 이에 따라 최종 우주물체발사자(system integrator)가 각각의 필요한 부품회사에 엄격한 기준의 인증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부품을 요구하되, 일단 당해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해주고 최종수요자인 자신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 만약 발사체에 payload로서 인공위성이 탑재되는 경우에는 양 system integrator의 상호 책임은 발사체 발사자에 책임을 집중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현 추세이며 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삽입하지는 의견이 있었으나(박정주, 이준) 법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규정할 필요는 없고,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은 개별 계약 등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과 현재의 문안으로도 충분히 발사체 발사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결국 문구 삽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우주개발사업이 고비용 및 고위험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우주사고의 속성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가 막대하므로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게 할 경우 초기 단계인 우주개발사업의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주손해에 대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무과실책임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2,00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현재 발생가능한 사고 중 최악의 경우인 운항중인 비행기에 대한 손해를 모델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사건으로는 우주손해배상법초안에서 규정된 데로<sup>13)</sup> 특별인출권(SDR)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특별인출권(SDR)의 개념은 국제통화기금의 화폐단위로 한국의 화폐단위인 원화보다도 세계적인 물가변동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각 우주협약에서도 동 계산단위로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상법 제789조의<sup>214)</sup>에서도 동 계산단위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조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는바<sup>15)</sup>, 우주물체 발사자가 우주사고 당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액을 법규정에 고정하기 보다는 미국의 예를 따라 발사자가 발사허가신청시 정부가 발사체의 제원, 발사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도의 손실예측액(MPL)’을 정하고 이를 책임한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sup>16)</sup> 그 근거는 현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에 최소의무한도액은 4,000만 SDR(탑재체중량 1t 이상은 6,000만 SDR)이고, 본 법 초안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1억 5천만 SDR이므로 우주물체 발사자는 어쨌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 1억 5천만 SDR까지 보험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고 이는 ‘최대한도의 손실예측액’을

13) 제7조 (손해배상책임한도)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 및 정부가 당해 우주사고 당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우주물체 발사자는 1억 5천만 계산단위까지 배상.....).

14) 상법 ...제789조의2 (책임의 한도) ①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고 이미 동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15) <http://www.cshong.com/bbs-01>, 「우주사고 손해배상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07.1.19(과기부 평촌청사회의실)

16) 상기 간담회 참석자인 황진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부 부장), 박정주, 이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의견임



넘는 액수일 수도 있어서 결국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대한도의 손실예측액(MPL)은 보험분야에서 고려되는 대상이지 손해배상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고 입법례를 보아도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경우 처음에는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다가 현재는 최대한도액을 고정하는 유한책임으로 전환하였으며 1억5천만 SDR 개념은 결국 발사자의 최대책임한도를 한정해 준 것이므로 발사자를 위하는 것이지 결코 발사자 통제를 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sup>17)</sup>과 최대한도의 손실예측액(MPL)을 협의하는 절차를 법에 넣게 되면 법문이 복잡해지게 되고 또한 동법 제7조에 정부가 원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지난 50년간의 전 세계 우주개발역사의 경우를 봐도 발사자의 책임과 관련한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에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sup>18)</sup>. 이러한 과정의 논의를 거쳐,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최대한도의 손실예측액(MPL)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으로서 결국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단, 최대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법안에는 일단 2,000억 원으로 명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동 조문을 규정되었다.

## 7.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동 법 제6조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와 동일한 내용인 책임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를 삭제하도록 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동 조항에서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상을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주손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우주물체 발사자로 규정하여 탑재체 관리자와 발사체 발사자를 모두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탑재체인 인공위성이 궤도를 비행하는 과정 즉, 발사체 발사자의 행위가 종료 되고 난 이후에는 손해 발생의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굳이 탑재체 관리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된다<sup>19)</sup>.

17) 상기간담회 참석자인 함철훈 교수의 의견임

18) 상기간담회 참석자인 장현섭 보좌관의 의견임

## 8. 정부의 조치

동 법은 제7조에서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정부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및 제3항은 우주손해배상액이 우주물체 발사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안에서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업성이 낮은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동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사체 발사자는 발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금액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보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며 배상한도액을 설정한 것도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경우에 비하여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정부의 지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2항에서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대 재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주손해의 속성상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9. 권리행사의 기간

이 법은 제8조에서 우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에서는 “이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손해의 발생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일자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일용 그 기산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는 동일한 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것

19) 발사용역 제공자인 발사체 발사자가 탑재체 관리자를 피보험자로 추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관행임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으로 생각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이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민법의 규정<sup>20)</sup>에 부합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제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sup>21)</sup>.

#### IV.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sup>22)</sup>

우주손해배상법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의 현 상황을 살펴보는 일은 일면 꼭 필요한 일이라 사료되어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1. 보험시장의 규모

전 세계적으로 위성보험 시장의 인수능력은 약 9억불 수준이며, 그 중 발사보험 시장의 인수능력은 2005년 기준으로 약 6억불 정도이다. 전체 시장 중 62%가 영국,

20)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1) 동법초안에는 “..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에 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권리 행사의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한 날”로만 규정하고 “손해의 발생을 안 날”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불합리한 규정이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손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한 날”은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된 것이다.

22)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체계 구축 연구, 연구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종보고서(KINS/GR-340), 23면 이하 발췌함; 우주보험의 개요, 정의 및 국제보험사례등은 국내 보험사인 코리안리 재보험(주)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제3자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과 영국 Marsh사 위성보험약관을 인용하였다.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미국 보험시장도 전 세계 위성보험 담보력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일부 차지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위성보험 시장 인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위험의 대부분이 해외 재보험자의 담보력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sup>23)</sup>.

## 2. 위성보험 사고 사례 및 규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사체 및 인공위성을 포함한 탑재체의 물질적 손해와 제3자의 물질적 인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는 많지 않다.

발사체 및 위성체의 결함 등으로 인한 실패로 주요 보험금 사례는 다음과 같다.<sup>24)</sup>

### o Amazonas(Eurostar 3000)

- Propulsion system anomaly
- Sum insured EUR199million, proof of loss not yet filed

### o Estrela do Sul(LS 1300)

- Sola array deployment anomaly following launching in Jan. 2004
- Proof of submitted to insurers for CTL of US\$250million

### o Atlantic Bird 1(Italsat/Geobus)

- Payload related anomalies
- Filed for CTL of EUR190million

### o Superbird 6(Boeing 601)

- Significant power degradation resulting from low perigee following launch
- Sum insured at launch of JPY25.8million

## 3. 제3자 책임보험 사례 및 규모

발사체 발사후 폭발등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주요 사

23) 외국의 주요 발사내용에 대한 위성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Zenit rockets (해상발사): 3억불, Proton rockets: 3억~5억불, Arianespace: 6천만 유로, CGWIC: 1억불, H2A: 1억6천만불 등이다.

24) Willis Korea Ltd., "Introduction to Space Risks and Satellite Insurance Market & Space Insurance Market Overview, 2005. 5.

례는 다음과 같다.

1996년 중국에서 발사되던 로켓이 추락한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약 2백만불 정도의 배상책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발사된 로켓이 카자흐스탄의 숲에 추락하여 동물과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 때 발생하여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되어지던 화재가 실은 자연 발화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실제로 보험금은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인 25만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1996년 중국이 아닌, 2005년 유럽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가정할 시에 지급될 배상책임 보험금은 2백만불을 상회하는 2천만불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발사와 관련하여 배상책임 사고 발생개연성은 높지 않으나, 사고 발생시의 손해액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국내 위성보험 가입현황

국내 인공위성 보험가입은 1995년 무궁화 1호를 시작으로 총 5건의 보험가입 사례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통신 및 방송위성의 경우 1억불 ~ 2억불 규모이며, 기타 위성은 약 0.3억불 수준이다.

국내 기업의 인공위성 발사의 경우 발사장소가 해외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그 해당 국가로부터 발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가입사례를 고려하여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및 해외 가입사례를 참고하여 볼 때 현재 약 1억불 ~ 3억불 정도의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재보험자의 담보능력을 이용하는 점, 발사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약관(Satellite Insuranc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에서의 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담보내용이 적절할 것으로, 이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신체장해 및 대물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인공위성 발사 시 위성의 추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신체장해 및 대물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인공위성 궤도 진입 후 타 위성 궤도 방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이다.

앞으로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에 소재한 우주센터의 발사대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주사고에 대비한 법제인 우주손해배상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상기 서술한 위성보험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V. 각국 우주사고 손해배상법<sup>25)</sup>

각 국가들은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주사고 손해배상법을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한 나라는 없어 보이며 대부분이 우주개발 및 활동을 위한 기관 설치법에 우주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국가들의 우주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 1. 미 국

미국은 NASA 설치의 근거법인 항공우주법 제308조 및 제309조에서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308조 (a)에서는 우주비행체의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미국 국가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308조 NASA의 우주선에 의하여 발사할 경우에는 우주비행체 이용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NASA는 제3자 책임보험 적정한도와 내용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NASA는 보험금액이 부족할 경우 지출가능 예산으로 우주물체 이용자를 위해 제3자 손해보험을 들 수 있으나, 가능한 최대한도를 이용자로부터 상환한다. 또한 제 308조 (b)에서는 NASA가 책임보험 내용·가액 및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주비행체 이용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당해 이용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단, 이용자의 책임보험에 의해 배상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제309조에서는 비행체 개발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NASA가 비행체 개발자(자연인은 불포함)를 위해, 당해 법인과의 약정으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대체 부담을 제공할 수 있다. 개발자는 제3자 또는 미국정부로부터 제기되는 손해배상 최대액에 대한 보험 또는 재정적 책임을 NASA로부터 제공 받는다. 또한 NASA가 제시한 안전기준 요구조건을 개발자가 충족하지 않으면 NASA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대체부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NASA는 개발자와 상호책임면제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개발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미연방법규 Title 49, Subtitle IX-상업우주발사행위(구 상업

25)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체계 구축 연구, 연구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종보고서(KINS/GR-340), 31-37면.

우주발사법) §70112 및 §70113에서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994년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에 의하여 인공위성발사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제3자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법은 인공위성 발사허가를 취득한 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못할 시에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한다. §70112에서는 손해배상의 최대액을 산정하여 면허보유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3자의 사망, 상해, 재산상 손실의 경우 5억달러 한도, 미정부재산상 손실의 경우 1억달러 한도로 하고 있다. §70113에서는 운송부장관은 제3자가 면허보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미국정부에 의한 지급을 제공한다. 다만 그 지급은 §70112하의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고 15억달러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의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15억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책임의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1984년 상업우주개발발사법을 제정할 당시 보험금액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인공위성발사업체들은 무제한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발사사업의 육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다.<sup>26)</sup>

## 2. 러시아

러시아는 우주활동법 제25조에서 보험가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30조에서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sup>27)</sup> 그 주 내용을 보면 제25조에서는 과학과 국가 경제를 위하여 기관 및 개인이 스스로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또는 우주기술의 개발 및 사용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러시아 연방법률이 정하여져 있는 금액으로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의무적인 보험의 보험금액은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멸실에 충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법에 의하여 우주사고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률상 의무화하고 있다.

제30조에서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연방법에 따라서 우주활동 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우주 활동 수행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는 관련된 우주산업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의하여 배상된다. 만일 이러한 손해가 우주산업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

26) 줄고,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한국우주법학회지(19권1호), 2004년, 24면이하.

27) 줄고,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한국우주법학회지(19권1호), 2004년, 26면.

한 과실의 결과라면 손해에 대한 책임은 부분적으로 해당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외계를 제외한 러시아연방의 영토 또는 주정부의 관할권 밖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것으로부터 가해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지구 표면을 제외한 어떤 장소에서라도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 또는 다른 우주물체에 의해 그러한 우주물체내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이나 개인의 과실은 그들의 과실과 그 과실에 후자의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비율로 나타나야 한다. 다수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반된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로 인해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피해자는 모든 기관과 개인 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은 그들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배분된 거래자들에 대하여 또는 균등한 책임부담이 불가능한 경우,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우주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가해진 손해에 대하여 우주산업의 생산과 사용에 참여하는 기관과 개인의 책임은 보험총액 또는 우주산업과 우주활동에 연관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계약이 제공하는 손해보상에 국한된다. 만약 보험총액 또는 손해보상이 우주활동의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가해진 손해에 대한 보상에 불충분하다면, 러시아연방방법으로 명기된 방법에 의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첫째 정부가 직접손해에 대한 완전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둘째 발사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은 보험액에 한정한다.

### 3. 일본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설립 근거법에서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 제21조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인공위성 등의 발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민간부문에 의하여 발사사업에 관련되는 보험가입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제3자 손해배상제도의 특징은 우주사고로 인한 배상보험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배상과 책임보험제도를 정비하였다.<sup>28)</sup>

28) 줄고,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한국우주법학회지(19권1호), 2004년, 30면 이하; 우주개발사업단법은 1969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사업단의 설립, 조직, 업무, 재무 및 회계,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에 의한 손해배상 조치의 장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과 수탁발사에 관한 특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개정 내용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발사업무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과 보험금액의 결정은 보험금액이 피해자의 보호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적절하게 책정되고 보험자의 부담이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아닌 주무장관(문부과학성, 국교교통성, 우정사업청)에게 권한이 주어졌다. 일본의 최신형 발사 로켓인 H-II의 경우 제3자 손해보험의 약정금액은 일화 200억 엔이다.

동법 제22조에서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수탁발사에 관계되는 계약을 체결할 시에 특약에 의하여 수탁발사관계자(수탁발사관계자란 발사위탁자 및 수탁발사에 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의 손해배상 책임의 전부를 부담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동법 제21조의 보험과 관련하여 수탁발사관계자가 맺는 보험계약은, 발사위탁자가 기구를 대신해서 기구를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 4. 호 주

호주의 우주활동과 관련 자국의 국내법으로는 2002년 수정된 우주활동법(Space Activities Act 1998: Act No. 123)이 있다. 동 법률은 i) 호주 영토 내 또는 영토 외에서의 호주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우주활동의 규율, ii) 동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우주 활동에 의하여 인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제공, iii) UN 우주법 (UN Space Treaties)하의 의무의 이행, iv) 구체적인 우주 협력 협정에 대한 호주의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8장(Part)으로 구성된 동 법률은 제3장에서 우주 활동의 승인 및 발사 허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우주사고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정하고 있다<sup>29)</sup>. 또한 제4장에서는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29) 상계논문, 호주 우주활동법 제3장 제7절 제47조(보험 및 재정적 요건의 충족) (1) 이 절은 3,4,5절에서 언급되었던 보험 및 재정적인 요건을 명백히 한다. (2) 발사 허가, 국제 발사 면장의 소지자 또는 발사와 귀환을 다루고 있는 제43조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 발사와 귀환에 관하여 보험 및 재정적 요건의 충족한다: (a) 발사 또는 귀환에 대한 책임기간을 통하여 제48조의 보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b) 규정에 따라 당해 소지자가 발사나 귀환에 관하여 제4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인 발사 또는 귀환에 대해 직접 재정적인 책임을 부담한 경우.

##### 제48조 보험요건

(1) 보험요건은 다음과 같다. (a) 발사허가에 의해 인정된 발사 또는 귀환, (b) 제43조에 의거하여 인정된 귀환, (c) 허가 또는 인증의 소지자가 발사 또는 귀환으로 야기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이 법에 의거하여 배상금은 지급해야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 (d)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된 경우. (참조 1: (c)와(d) 항에서 언급한 보험은 분리된 정책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그에 갈음하여 허가 또는 인증의 소지자는 당해 소지자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둘 다 보증하는 단일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참조 2: 오스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다.

호주에서 수행되는 모든 우주 활동은 국적을 불문하고 호주정부(Space Licensing and Safety Office)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호주국적자의 호주 외부에서 수행되는 우주 활동 역시 이러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 법률은 호주정부(Space Licensing and Safety Office)의 허가를 얻은 발사자는 반드시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에서의 손해배상액은 발생 가능한 최대 손해액(MPL)을 미달하면 아니 된다.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호주가 발사국이거나 동 물체의 발사관리자가 될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이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는 1년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호주 밖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호주정부는 국제법 하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발사운영자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호주정부에게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호주의 발사운영자는 발사 허락 하에서 요구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발생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발사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서 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책임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책임이 없다. 제3자의 요구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사운영자는 보험금에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호주정부가 보험금액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sup>30)</sup>

트레일리아 연방은 이 항에 의거 어떠한 보험도 선택할 의무가 없다. 즉, 그 부담은 보험 및 재정적 요건의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인증의 소지자에게 지워진다.)

(2) 보험 요건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관습법 또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러한 손해에 배상해야 하는 책임에 관하여 발사로 야기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제 발사 면장에 의해 인정된 발사에 의해 충족된다. (참조 1: 허가서의 소지자는 당해 소지자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둘 다 보증하는 단일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참조 2: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 이 항에 의거 어떠한 보험도 선택할 의무가 없다. 즉, 그 부담은 보험 및 재정적 요건의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허가서의 소지자에게 지워진다.)

(3) 관련된 각각의 발사 또는 귀환에 관하여 총 보험금은 7억 5천만 달러의 금액과 다음의 금액 중의 적은 쪽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a) 법규에서 이행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발사나 귀환 도중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발생가능한 손해의 최대한의 금액, (b) 만약 그 법규가 이행의 취지를 위한 최소의 금액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을 이행시킬 때 즉, 그 방법을 사용함을 결정된 금액.

30)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체계 구축 연구, 연구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종보고서(KINS/GR-340)., 35-36면.

## 5. 영국

영국의 상업 우주활동은 우주법(Outer Space Act 1986)에 의해서 규율된다. 동 법률은 영국과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우주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발사와 우주물체의 운영과 관련한 활동에 적용 된다. 인적 적용 범위로는 영국인과 영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 스코틀랜드 회사 및 기구 등 영국 국내법 하의 모든 주체에게 적용 된다.

우주물체의 발사 및 이용과 관련 행위에 관한 영국의 국제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대신(the Secretary of State)에게 인가권한을 수여하고 있다. 우주활동에 관한 인가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관하여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우주활동에 관한 인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i) 공공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때, ii) 그 활동이 영국의 국제적 의무와 일치할 때, iii) 영국의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을 때. i) ii) iii)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sup>31)</sup>

## VI. 나아가며

본 글에서는 우선 우리의 손해배상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현황에 대하여 서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미 국내인공위성이 보험에 가입하여 우주에서 활동 중에 있다. 앞으로 고흥 외나로도에 소재한 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국내법적으로 동법을 제정하므로 해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주물체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체제를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살펴본 바, 이들에 대하여 특성을 살펴보면, i)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의무적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ii) 우주물체 발사자가 손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전담하며 iii)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보상책임을 지거나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기에서 각국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우주손해배상법도 제4조에서 우주물체발사자가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의 제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31) 상계보고서, 36-37면

있으며 제6조에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7조에서 정부가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우주손해배상법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며 일면 우주개발이 활발해 질 21세기의 현실에 적합한 체제를 구성하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동 법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우주손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와 같은 분쟁조정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32)</sup> 그러나 우주손해가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와 같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상설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우주사고, 발사자, 책임, 손해, 무과실책임, 손해배상, 책임보험, 구상권, 재보험, 보상책임

32) 예컨대, 원자력손해배상제15조를 참조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 제○조(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 ① 우주손해의 분쟁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주사고로 인한 우주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운영·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참 고 문 헌

- 김두환, 국제항공법학론, 한국학술정보, 2005년  
김선이, 항공사고책임론, 한국항공대학교, 2006년  
김종복/신흥균/홍순길, 신국제항공우주법, 한국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년  
김한택, 항공우주법, 지인북스, 2007년  
항공우주법학회지, 한국항공우주법학회, 19권1호, 2004년  
우주법 제정을 위한 입법조사연구(주간연구책임자, 신흥균), 과학기술부  
우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체계 구축 연구, 연구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종보  
고서(KINS/GR-34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년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6년
- 原典 宇宙法, 丸善 フテネシト株式會社, 1999년  
Willis Korea Ltd., "Introduction to Space Risks and Satellite Insurance Market & Space  
Insurance Market Overview, 2005. 5.
- 웹사이트 <http://www.cshong.com/bbs-01>  
<http://www.unoosa.org/oosa/index.html>

## Abstract

### The compensation for damage by space accidents

Kim, Sun-Ihee\*

In 2002 Republic of Korea successfully launched a self-made mineral proportion rocket and it is expected that she will be able to have own space launching system by 2010.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 new law should be established to impose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space accident. Therefore, The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was passed in Korean Congress on Nov. 22, 2007 and it will be enforced in six month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reparation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that a launch causes; and the Commonwealth should be insured against any possible space accidents to pay for such a damage. Here space accident means the damages to our life, body, and properties from the launching of space objects.

There should be an actual loss to establish the compensation of Liability Act. Article 2 in Liability Act defines "damage" as follows: the term "damage" means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f persons. Physical and material damages are included in the conception of damage. The meaning of a launching includes any test launch and launch for a real arrangement, which will ultimately provides a wide range of compensation.

Article 4 indicates that absolute liability should be imposed in compensating for damage by space accidents. Article 4 also indicates that a launching party should be absolutely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In general, liability stands where fault is. But if the activity is ultra-hazardous and causes serious harm, the individual needs to compensate for the

---

\* Professor, Korea Aerospace Univ.

damage unlimitedly. Because of the many launchings for the Seattleite launching, a launching organization is obligated to the liability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the space accidents.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to be insured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s obligatory. It sa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in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the person who wants to receive an approval for launching needs to be insured in compensation for the possible damage by space accidents.

**Key words** :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space accident, compensation, damage, rocket, liability, insurance, launching, personal injury, seattleite